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법률시행 관련 안내

자주하는 질문 Q&A



Q1. 교사자격취득예정자에게 무엇을 안내해야 할까요?

A1. (범죄경력조회) 교사자격검정원서 제출 시, 성범죄경력 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됨을 반드시 사전 안내하셔야 합니다.

(마약류 검사) 건강관리협회(사전예약필요), 기타 검사 가능 의료기관(사전 문의 필요)에서 TBPE(간이검사)를 통해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셔야 합니다.



Q2. 범죄경력을 조회하기 위해 꼭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활용해야 하나요?

A2.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활용 또는 대학 소재지 관할 경찰서에 공문요청을 통해 범죄경력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에서는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조회를 위한 협조를 요청(2021.5.10./2021.6.4.)**하였습니다. 다만,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별도 시스템인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을 통한 개인 또는 일괄 조회 불가)



Q3. 질병 치료 목적으로 처방받은 약물을 복용하는 사람의 경우, 마약류 사용검사에 양성 반응이 나타나면 어떻게 하나요?

A3. 치료 목적의 약물은 마약류 사용검사서에서 '양성'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나, 이 경우, **의사의 진단서**를 통해 '마약류 중독자가 아님'이 증명되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4. 검사 후,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는 본인이 직접 방문수령하고, 검정기관에 직접 제출 해야 하나요?

A4. 검사 후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를 본인이 직접 방문 수령해야 합니다. 이때 검사 방식 및 진단서, 검사결과통보서 발급 가능여부는 기관마다 다르기 때문에 사전 문의가 필요합니다.(진단기관 안내 참조)
다만, 건강관리협회(메디체크)에서 검진을 받은 교육청 자격연수대상자의 경우, 교육부에 등록된 교육청 담당자에게 검사결과가 일괄 통보+개인별 우편 발송되며, 이는 교육부-건강관리협회 협약사항입니다.
그러나 대학의 경우, 일괄 통보가 되지 않으며, 예비교사의 검사결과 일괄 통보를 위해서는 대학별로 의료기관과의 협약을 추진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Q5. 결격사유 조회확인서는 어떻게 보관해야 하나요?

A5.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교원자격증 발급 심사서류는 준영구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에 <특히 유의>하여 범죄경력조회 공문과 제출받은 진단서(또는 검사결과통보서)의 원본 또는 전자파일(원본 스캔본 포함)을 심사서류들과 함께 보관하시면 됩니다.



교사 자격의 신뢰도를 높이고,
교원양성기관과 학교의
교육환경을 안전하게 보호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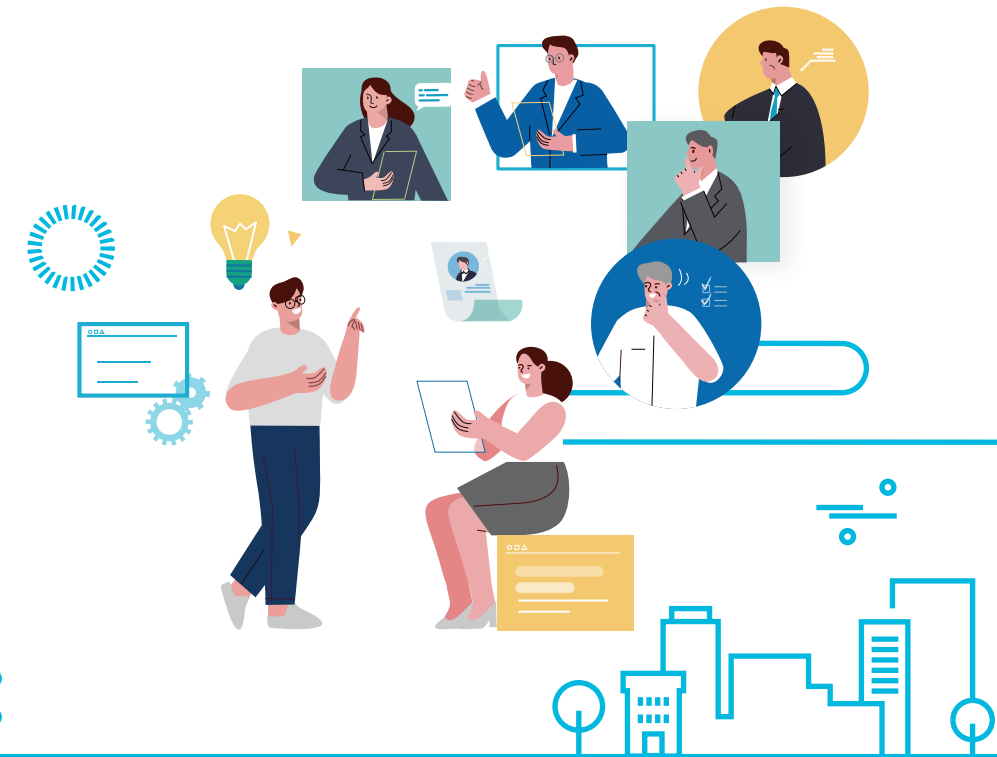
관련 문의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관 교원양성연수과
TEL) 044-203-6976 FAX) 044-203-6706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법률시행 관련 안내

<교원양성기관(대학, 교육청)용>



법률 개정에 따라, 2021년 6월 23일부터 마약류 중독자 및 성범죄자의 교사자격취득이 제한되었습니다.



법률 개정 이유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과 같은 디지털성범죄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 재발 방지를 위하여 성장기에 올바른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의 자격 취득을 더욱 엄격히 하려는 것임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법률 개정 내용

[법률 제17611호 및 제17664호, 2020.12.22., 일부개정, 2021.6.23. 시행]

「유아교육법」제22조의2, 「초·중등교육법」제21조의2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1.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3.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 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법률 적용 대상

- 정교사(1·2급), 전문상담·보건·영양·사서교사(1·2급), 실기교사, 준교사 **취득 신청자 전원** (재발급, 부전공 이수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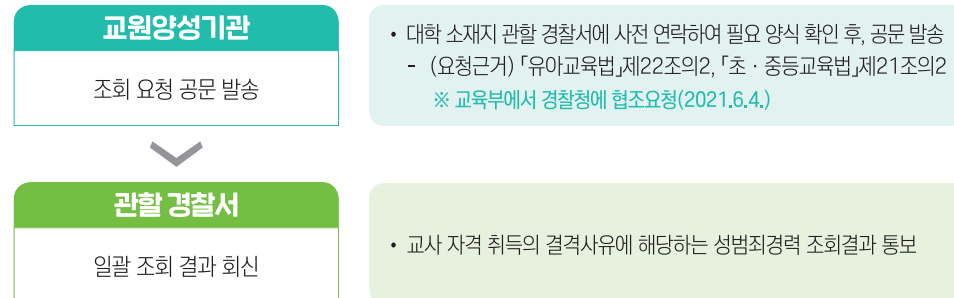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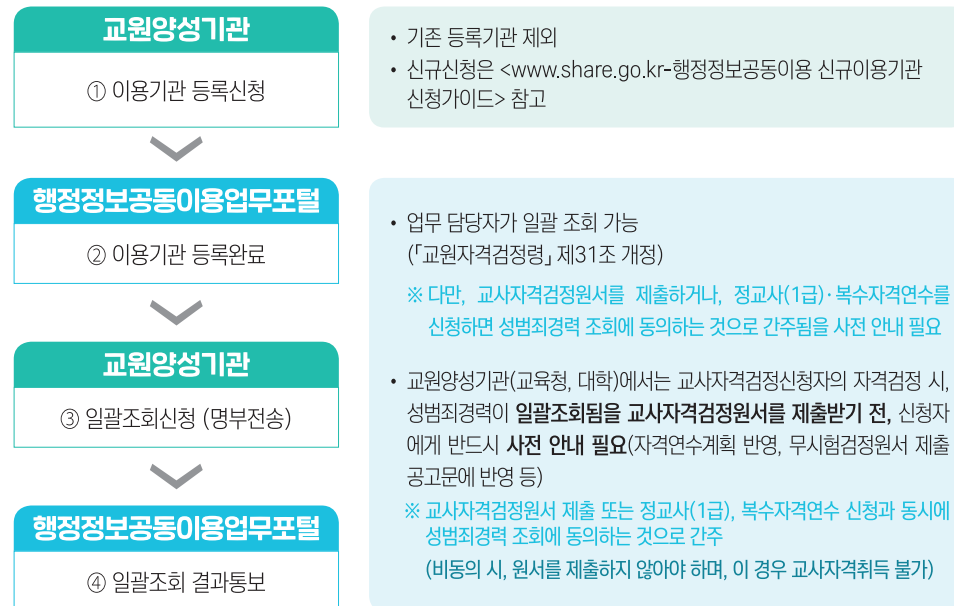
성범죄경력 확인절차



기관 일괄조회(반드시 개인에게 사전 안내), 개인별 제출 불가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활용 일괄조회

- 교원양성기관(교육청, 대학 등)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www.share.go.kr)'을 활용 일괄 조회(권장)



※ 법률 시행 이후 성범죄경력 뿐 아니라, 법률 시행 전 성범죄경력도 조회 대상에 포함됨

조회 비용: 별도 비용은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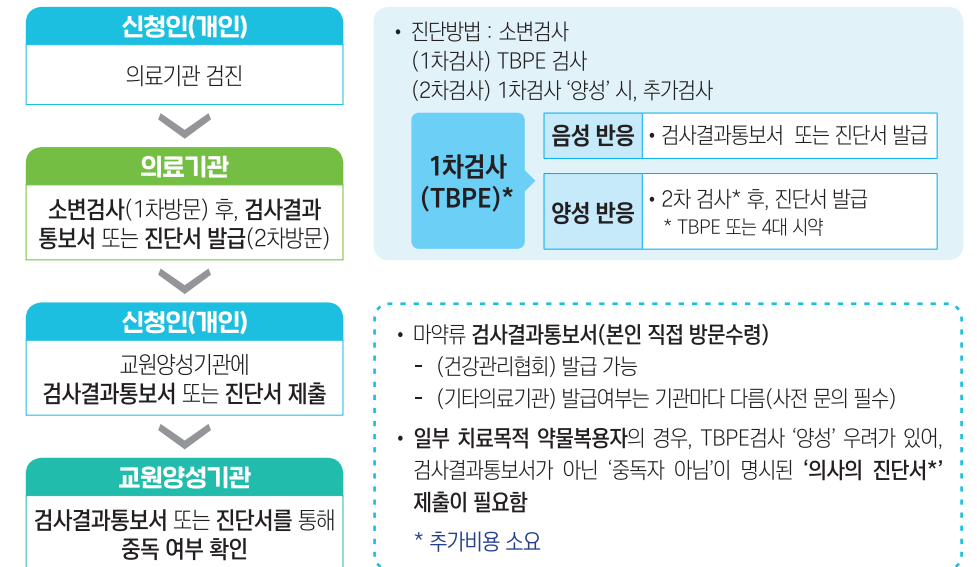


마약류중독여부 판별절차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의사 진단서 제출

- 교사자격 취득신청자가 의료기관을 통해 개별 진단 후,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 제출 ※ (발급소요일) 병원에 따라 소요기간 약 3~15일 소요



※ 검사 시, 기저질환으로 인한 장기 복용약물을 제외한 기타 약물은 7일 이상 복용 중단 권고
※ 감기약 등의 경우도 검사민감도가 높아 양성반응이 가능하므로, 양성반응 시 재검을 통해 확인 필요

진단 기관(개인별 선택 가능) 및 비용

• 건강관리협회(메디체크) 전국지부 : 교육부 협약체결기관

- 국가건강검진(2년마다 1회) 시, 해당 검사를 포함하고, 교사자격취득 시 별도 검사결과통보서를 활용 가능

검사	검진비(검사결과통보서)	진단서발급 추가비용
TBPE	국가건강검진 병행 시 5,000원(비병행 시, 6,000원)	+ 10,000원

• 일반의료기관 : hikorea.go.kr(법무부지정 의료기관*), 사전문의 필요

검사	검진비(검사결과통보서)	진단서발급 추가비용
TBPE	7,000 ~ 25,000원	+ 10,000 ~ 20,000원

* 취업비자 입국 외국인 대상 검진기관

- 1차 검사 양성 반응(일부 감기약 등 가능) 시, 4대 시약검사를 통한 2차 검사 가능 (TBPE검사보다 많은 비용 소요)

[참고] 한국건강관리협회 검진 방법

구분	사전예약명	검사결과통보서 수령
교육청 자격연수자	• 교사자격취득용 검사-서울* 등 * 소속교육청 지역명(서울, 충북 등)	• 소속 교육청으로 일괄통보 및 개인별 우편 발송(직접 방문수령 불필요)
기타 (대학, 교육대학원 등)	• 교사자격취득용 검사-대학* * 지역명이나 대학명이 아닌 "대학"으로 예약	• 개별 방문수령 필요